

# 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501 442 - 245	(전화번호)	전 결 규정 조 항 전 결 사항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1980. 6. 3		
보존년한			

보 조 기 관	제2부시합 전 결 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2부장	법무담당관 (도시안 심사)	결사필
기안 책임자	정 환 영 80.6		

경 유 수 신 함 조	각 안 참 조 도시계획국장	종 류	기
제 목	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정 승인		

제1안. 내부 결재

1. 건설부 도시 제145호(78.6.15) 및 제214호(78.8.2)로 결정 도시된 종로5가-제1화동간 도로 및 북아현동-제2한강교간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거점화 건설부 도시 제463호(78.12.10)의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별안과 같이 지정 승인 조치 합니다.

제2안. 도시안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">법무심사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1980.6.2</td> <td style="width: 20%;">제112호</td> </tr> <tr> <td>담당자</td> <td>법무국장</td> <td>법무담당관</td> </tr> </table>	법무심사	1980.6.2	제112호	담당자	법무국장	법무담당관
법무심사	1980.6.2	제112호					
담당자	법무국장	법무담당관					
서울특별시 도시 제 145호							
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정 승인							

1. 건설부 도시 제145호(78.6.15) 및 제214호(78.8.2)로 결정 도시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을 다음과 같이 지정 승인 하겠나 도시계획법

제 13 조와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(78.12.10) 의  
 권한 위임 사항에 의거 이를 고시 한다.

2. 관제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과와  
 관한 신청 시인 봉사실 및 도시정비과에 비치  
 하여 도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임니다.

1980. 6

서울특별시 광

도로 지적 승인 조서

구분	등급	구별	번호	복원	연장	시점	종점	비고
신설	광로		66	40 <sup>m</sup>	1,500 <sup>m</sup>	종로5가	해와동3라리	
"	"		58	"	6,800 <sup>m</sup>	북아현동	합정동	북아현동-동인동간 2,900 <sup>m</sup> 지적고시

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 생략)

제 3 안

수신: 건설부 광관 발신: 시 광

제 목: 등 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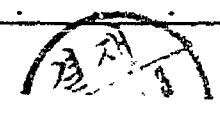
1. 건설부 고시 제 145 호 (78. 6. 15) 및 제 214 호  
 (78. 8. 2) 로 결정 고시된 당시 관내 도시계획 시설  
 (도로) 을 별첨과 같이 지적 승인 하겠기 보르 합너어  
 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

제 4 안

수신: 총무처 광관 (문화공보관) 발신: 시(국) 광

제 목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 의뢰 합너어.  
 가. 게재 구분: 고시.



나. 제재 건명: 도시계획시설(도로) 지정 승인

라. 관계 법규: 도시계획법 제13조

리. 제재 내용: 별첨 고시문 사본

첨부: 고시문 사본 2(1)매.

### 제 5안

수신: 수신처 감소

발신: 시각

제목: 등 건

1. 지구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은 별첨과 같이 지정승인 하였기 통보하나 도면정리 및 관계  
의에 통보하여 도시계획 업무에 착수하도록 할 것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

수신처: 종로, 마포, 서대문구청장

### 제 6안

수신: 지하철 분부장

발신: 시각

제목: 등 건

1. 양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은 별첨과 같이  
지정승인 하였기 통보하나 업무에 착수하기 바람.

첨부: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.

### 제 7안

수신: 제개발 2과장, 도시계획 1과장

발신: 과장

제목: 등 건

1. 양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은 별첨과 같이  
지정승인 하였기 통보하나 업무에 착수하시기

바깥이다.

첨부: 고서준 사본 및 도면 일부 등.

고 시 안

건설부고시 제 145호

서울도시계획시설(도로,광장)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결정 고시  
한다.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 
한다.

1978. 6. 15

건설부장관

- 가.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및 결정조서 : 별첨
- 나. " (광장) " : "

별첨 도면표지와 같음 (도면생략)

도면은 서울특별시청에 보관. 끝.

가. 토지매각 및 변경토지

구분	종류	번호	종류	폭원 (m)	면적 (㎡)	기 점	종 점	비고
✓ 신접	광로	66		40	1,500	종로5가(공이)	예화동로터리	
✓ " "	"	60		40	700	남대문(20호광장)	도동 2차	
✓ " "	"	61		50	2,490	동작동	사당동	
기정	"	20		40	7,780	서초동	송파동	
✓ 변경	"	20		50	7,780	"	"	
✓ 택지	대로	31	2	30	1,800	서초동(84호광장)	92호광장	택지
✓ 기정	"	87	3	25	5,230	상도동	서초동	
✓ 변경	"	81	3	25	2,880	"	사당동	구관축소
✓ 신접	광로	64		40	4,150	서초동(84호광장)	사당동	
✓ " "	"	65		40	1,400	노동진 수원지	상도동 광장	
✓ " "	"	63		40	2,750	상도동광장	봉천동	
✓ 택지	중로	68	1	20	1,640	상도동	봉천동	
✓ " "	대로	1	2	30	450	남대문(20호광장)	도동 2차	
✓ 기정	"	35	2	30	12,250	동작동(81광장)	곡선면 광역	
✓ 변경	"	35	2	30	9,760	사당동(82광장)	"	

건설부 고시 제 214 호

서울 도시계획시설(고속철도, 도로, 공장, 녹지)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및 결정 고시한다. 관계도시를 서울시청과 관할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적하여 일괄인여계 보이기 한다.

1978. 8. 2.

건설부장관

- 가. 고속철도 변경조서 : 변경
- 나. 도로변경 및 결정조서 : "
- 다. 공장 결정조서 : "
- 라. 시설녹지결정조서 : "

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(도면성략). 끝.

4. 도로연장 및 연장 노선

구분	종류	구분	번호	주원 (A)	연장 (M)	기	종	비	고
✓	신설	공로	58	40	6,800	북아연동(공장12)	양정동(공장29)		
	기정	도로	2	8	4,750	노고산동	양명동4가(공12)		
	변경	"	2	8	3,100	합정동(공장29)	"		연장속소
✓	신설	공로	67	40	1,700	용산동 2가	한남동(공장70)		
	"	"	68	40	3,600	한남동(공장71)	성계천 7가		
✓	기정	도로	2	28	5,100	성당동	만포동		
	변경	"	2	28	4,300	"	장원동		연장속소

5. 중앙 결정 노선

구분	번호	중앙 결정 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✓	125	고육덕말 동장	석호동 517입막	7,110	
✓	127	양백공장	양백동 291 "	4,755	
✓	128	봉천 "	봉천동 434 "	5,200	
✓	129	신명 "	신명동 74-1 "	5,200	
✓	130	동촌 "	동촌동 332 "	9,650	
✓	131	연목 "	동덕문구 연목동 170 "	7,500	

6. 시설부지 결정 노선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(㎡)	비고
✓	신설	부지	서대문구 금학역입구 부지	20,000